

광명 소하 신원아침도시1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본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은 2023.07.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당사 대표번호 (02-899-8281)에서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104동에 해당하며, 101동~103동은 아파트, 105동~107동은 광명 소하 신원아침도시2에 해당하오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www.sw-gm.co.kr)를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및 제59조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 본 공동주택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8.18.입니다. (청약자격의 기간, 나이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청약자격 : 본 공동주택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하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타입별 1인당 1건 청약 가능하며, 타입별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공동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발코니 확장 계약시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3년 09월 07일(목) 09:00~17:30	2023년 09월 13일(수) 16:00 이후	2023년 09월 18일(월) ~ 2023년 09월 20일(수)
방법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신청	당사 홈페이지 개별 확인	견본주택 방문 계약
장소	광명 소하 신원아침도시1 홈페이지 (www.sw-gm.co.kr)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17번길 11 (센트럴스퀘어 2층)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광명시청 균형개발과-8860호(2023.08.17.)]

■ 공급위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893-3번지 일원

■ 공급대상 : 지하 2층, 지상 20층, 4개동 공동주택 총 169세대 중 도시형생활주택 일반분양 23세대(도시형생활주택 조합원 2세대, 아파트 144세대 제외)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23,003.7900㎡ 중 도시형생활주택 3,826.3600㎡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이 복합 계획(101동~103동 아파트, 104동 도시형생활주택)
- 주차대수 : 204대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39대
- 건축물 층별 용도

구분	용도
지하 2층	전기실, 펌프실, 주차장
지하 1층	관리사무소, 방재실, 통신실, 입주민 집회소, 주차장
지상 1층	경비실, 주차장
지상 2 ~ 6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내진설계 등급 : 1등급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표기), 내진능력 : MMI 등급 진도 VII (0.204g)

■ 입주시기 : 2026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세대, m²)

주택 구분	모델	약식표기 (타입)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도시형 생활 주택	01	50	50.3700	18.5400	68.9100	77.0500	145.9600	27.7900	5
	02	51	51.6100	16.9100	68.5200	78.9500	147.4700	27.6300	8
	03	59C	59.9800	19.4700	79.4500	91.7600	171.2100	32.0300	5
	04	59D	59.9700	21.1000	81.0700	91.7400	172.8100	32.6900	5
	합계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규모 표기방법은 법정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평균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대지지분은 세대별 공급면적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타입	공급 세대수	동호별	구분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 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2024-01-25	2024-05-25	2024-09-25	2025-01-25	2025-05-25	2025-09-25	
50	5	104동 1호	2	1	174,513,000	282,327,000	456,840,000	45,684,000	45,684,000	45,684,000	45,684,000	45,684,000	45,684,000	45,684,000	137,052,000
			3	1	176,369,000	285,331,000	461,70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138,510,000
			4	1	181,939,000	294,341,000	476,280,000	47,628,000	47,628,000	47,628,000	47,628,000	47,628,000	47,628,000	47,628,000	142,884,000
			5~6	2	185,652,000	300,348,000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51	8	104동 3호, 4호	2	2	178,004,000	287,976,000	465,980,000	46,598,000	46,598,000	46,598,000	46,598,000	46,598,000	46,598,000	46,598,000	139,794,000
			3	1	179,899,000	291,041,000	470,940,000	47,094,000	47,094,000	47,094,000	47,094,000	47,094,000	47,094,000	141,282,000	
			4	1	185,579,000	300,231,000	485,810,000	48,581,000	48,581,000	48,581,000	48,581,000	48,581,000	48,581,000	145,743,000	
			5~6	4	189,369,000	306,361,000	495,730,000	49,573,000	49,573,000	49,573,000	49,573,000	49,573,000	49,573,000	148,719,000	
59C	5	104동 2호	2	1	205,440,000	332,360,000	537,800,000	53,780,000	53,780,000	53,780,000	53,780,000	53,780,000	53,780,000	53,780,000	161,340,000
			3	1	207,628,000	335,902,000	543,530,000	54,353,000	54,353,000	54,353,000	54,353,000	54,353,000	54,353,000	163,059,000	
			4	1	214,184,000	346,506,000	560,690,000	56,069,000	56,069,000	56,069,000	56,069,000	56,069,000	56,069,000	168,207,000	
			5~6	2	218,554,000	353,576,000	572,130,000	57,213,000	57,213,000	57,213,000	57,213,000	57,213,000	57,213,000	171,639,000	
59D	5	104동 5호	2	1	208,519,000	337,341,000	545,860,000	54,586,000	54,586,000	54,586,000	54,586,000	54,586,000	54,586,000	54,586,000	163,758,000
			3	1	210,734,000	340,926,000	551,660,000	55,166,000	55,166,000	55,166,000	55,166,000	55,166,000	55,166,000	165,498,000	
			4	1	217,389,000	351,691,000	569,080,000	56,908,000	56,908,000	56,908,000	56,908,000	56,908,000	56,908,000	170,724,000	
			5~6	2	221,827,000	358,873,000	580,700,000	58,070,000	58,070,000	58,070,000	58,070,000	58,070,000	58,070,000	174,210,000	

■ 공통유의사항

-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사업 주체 홈페이지(www.sw-gm.co.kr)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청약으로 진행합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아파트만 건립되어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은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안내문, 카탈로그 등의 CG 및 건축허가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환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있습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유상옵선 품목이 합산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동일 타입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하여 넷째자리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허가승인의 합산면적과 분양면적의 합산이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민공동시설, 관리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단 위치 지정이나 구획 구분 및 구분 등기 등은 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지하철, 도로 교통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장 인근의 개발계획은 광명시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공정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 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관 색채 및 패턴,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조정대상지역인 광명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의 변경,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시장의 변화,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개인 신용등급, 다세대 계약 등)로 인하여 대출조건과 취급 등이 불가(제한) 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상기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II

청약신청 자격 및 공급 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18)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이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1인당 신청가능 건수 : 1인당 타입별 1건씩, 총 4건까지 청약신청 가능함(동일인이 동일 타입에 2개 이상 또는 총 5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청약신청과 당첨 전부를 무효 처리함)
- 청약신청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및 호수는 사업주체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타입별 층.호수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일시	내용
청약일정	2023년 09월 07일(목) 09:00 ~ 17:30	인터넷 접수 : 광명 소하 신원아침도시1 홈페이지(www.sw-gm.co.kr)
추첨일정	2023년 09월 13일(수) 10:00 이후	당사 견본주택 : 광명 소하 신원아침도시1 견본주택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17번길 11, 센트럴스퀘어 2층)
당첨자발표	2023년 09월 13일(수) 16:00 이후	광명 소하 신원아침도시1 홈페이지(www.sw-gm.co.kr)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사업주체 자체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함. - 당첨자 확인은 당사 홈페이지(www.sw-gm.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대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청약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마감시간 내에 당사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양식작성 및 입력이 완료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인정되므로 마감시간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인증서비스가 활용되므로 청약신청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방식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광명 소하 신원아침도시1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별도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방법 : 견본주택에서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광명 소하 신원아침도시1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추첨일시	당첨자 발표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3년 09월 13일(수) 10:00	2023년 09월 13일(수) 16:00 이후	광명 소하 신원아침도시1 홈페이지(www.sw-gm.co.kr)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사 홈페이지에 청약 접수한 인원 중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동·호수 결정 방법	• 사업주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 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합니다.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일시 및 장소

- 계약일시 : 2023년 09월 18일(월) ~ 09월 20일(수) (10:00~17:00)
- 계약장소 : 광명 소하 신원아침도시1 건본주택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17번길 11, 센트럴스퀘어 2층)

※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일체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농협은행	301-0332-9285-51	정우연립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ex) 104동 302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4302홍길동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공급금액은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시(공통)	①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② 계약자 인감도장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③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④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본인발급용) ⑤ 주민등록표등본 1통

법인	①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② 법인 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통 ⑤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외국 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시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① 계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③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건본주택 비치) ④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사업부지 인근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배치구조 및 층,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사업부지, 평면도, 배치도, 건본주택 내 설치된 모형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기간 내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임의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위임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타 시설(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구역 및 동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함.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공급계약 (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3조와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 (공급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의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부동산등기(최초 공급계약서와 최종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 법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공동주택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주택 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시공사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와 대출취급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이며,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이자후불제로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사업주체에 일시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 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금액인 계약금을 완납한 후에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계약금이 일부라도 미납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공동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 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IV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50	5,700,000	570,000	5,130,000	
51	5,700,000	570,000	5,130,000	
59C	6,600,000	660,000	5,940,000	
59D	6,600,000	660,000	5,940,000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선호도,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기본제공품목 제한 적용)가 적용되며, 외부차호 미설치에 따른 개별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주 후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인접세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간구성상 플러스옵션이나 가전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약 및 계약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형 선택에 따라 에어컨 및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 전기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입주자가 준공 이후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확장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잔금)	새마을금고	9002-2030-3435-0	신원종합개발(주)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 홍길동

- 공동주택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발코니확장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1010301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안	설치개소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	
50, 51	1안	2	거실(주방)+침실1	3,650,000	365,000	3,28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사 : 삼성전자(주) • 모델명, 계약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견본주택 및 계약 시 확인필요)
	2안	3	거실(주방)+침실1+침실2	4,750,000	475,000	4,275,000	
59C, 59D	1안	2	거실(주방)+침실1	3,750,000	375,000	3,375,000	
	2안	3	거실(주방)+침실1+침실2	4,850,000	485,000	4,365,000	
	3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300,000	630,000	5,670,000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치 시공비용(2개소)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하며,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일은 추후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시스템에어컨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만 시공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의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현관 중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3연동	1,650,000	165,000	1,485,000	

3.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주방상판+주방벽체	2,800,000	280,000	2,520,000	

4. 거실 아트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유럽산 세라믹 타일	1,700,000	170,000	1,530,000	

5. 주방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내용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빌트인냉장고A	냉장	RR40A79(8)95AP	7,200,000	720,000	6,480,000	• 제조사 : 삼성전자(주)
		냉동	RZ34A79(8)65AP				
		김치	RQ34A79(8)45AP				
	빌트인냉장고B	냉장/냉동	RF60B91R2AP	7,200,000	720,000	6,480,000	
		김치	RQ33A74E1AP				
	전기쿡탑A	하이브리드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NZ63T5601AK	700,000	70,000	630,000	
	전기쿡탑B	인덕션(비스포크)	NZ63B6507XH	1,100,000	110,000	990,000	
		식기세척기	DW60T7065SS	990,000	99,000	891,000	
	전기오븐 36L	NQ36A6555CK	450,000	45,000	405,000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선택품목 (계약금, 잔금)	새마을금고	9002-2030-3435-0	신원종합개발(주)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 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 시 개별 납부)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시공사가 별도 통보하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입금 (입금 예시 : 101동3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3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바랍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완납하였다더라도, 추가선택품목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1. 공 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구,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문	세대내부 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디지털도어록	세대내부 문의 가틀, 발코니 PVC창호, 현관 및 대피공간 방화문
바닥	강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우수선홈통
벽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가변형벽체, 월패드, 발코니 벽도장	석고보드(해당 부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시멘트몰탈
천장	천장지, 등박스(우물천장), 반자돌림(몰딩 포함), 발코니 천장도장	천장면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면처리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욕조틀 등), 수전류, 약세사리,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휨, 천장재(천장틀 포함), 바닥 및 벽타일	조적, 방수, 미장, 전기배관/배선, 설비배관

주방	주방 상·하부장(상판 및 악세사리 포함), 수전류, 주방기기 일체(가스쿡탑, 렌지후드), 벽타일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소방관련시설
조명기구	부착형·거치형·매립형 조명등기구 일체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일반가구 및 기타사항	현관신발장, 수전류(발코니)	설비배관

3.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50	51	59C	59D	비고
마이너스 옵션 공사비	12,760,000	12,980,000	14,960,000	14,960,000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V

유의 사항

■ 공통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당 사업은 2021년 06월 17일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당 사업은 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단지내 조합분양 및 일반분양이 혼합 배치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책임지고 대출은행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시점에 따라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배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 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발코니확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최종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본 지역의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는 서면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함(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 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함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여 101~104동으로 부여되었으며, 공급시의 명칭과 입주시 명칭이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 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로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에서 진출입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외부의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계단/램프/옹벽 등은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 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실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는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되며,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침실2 또는 침실3에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되며,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 내에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따른 일부 공간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바닥 난방이 설치되나 샤워부스, 위생기구, 욕조 하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 및 설치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홈넷 월패드의 설치 위치와 수량, 사양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홍보관에 설치된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101~103동) 및 도시형생활주택(104동))은 지하 1~2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01~103동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경비실 등이, 104동에는 경비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헬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바닥, 주방 상판 및 벽체, 거실아트월 등에 사용된 엔지니어드 스톤(옵션 선택시) 및 인조대리석 타일 등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패턴·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의 형태 및 각 동 옥상, 지하주차장 등에 표현되는 줄눈과 지붕의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등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보관함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와 동선이 상이할 수 있고 설치 위치 및 개소,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택배차량은 주출입구를 통하여 지상1층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아파트 101동~103동과 도시형생활주택 104동으로 구성되며, 도시계획도로(8m 도로)로 분리되어 있고, 인접대지에 광명 소하 신원아침도시2(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가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광명시 건축 및 경관 통합심의 결정(2020.05.14)에 따라 광명 소하 신원아침도시1(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광명 소하 신원아침도시2(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는 입주민들이 어린이 놀이터, 맘스테이션 등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우연립 104동 남/북측으로 2m이상의 보행통로를 소하동2구역 사업지와 연계 설치하여 정우연립 104동 1층 필로티를 통하여 이동이 가능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동 보행동선에 간섭이 없도록 주차공간 계획 및 2개 조합 사업지의 연계를 위해 차량 동선 일부 구간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동선을 계획함을 확인합니다.
- 본 104동과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인 105동~107동의 지하주차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업주체인 정우연립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우연립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은 광명시 건축 및 경관 통합심의 결정서에 의거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동이용 협약이 필요함에 따라 별도 체결한 협약서에 의해 준공 후 관리사무소의 통합관리 및 입주민편익시설(주민운동시설 및 맘스카페 등) 전체에 대하여 양 조합사업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행하고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를 불가 합니다.
- 101~103동 세대 내 대피공간 설치되며, 104동 3층 이상 세대는 완강기 설치(발코니1)되어 비상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이 별도 구획되지 않는 타입은 완강기가 설치되며, 거실창에 소방관진입창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 단지주변 도로,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구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우연립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하원을 대상으로 지하주차장에 지하창고 시설물이 설치 될 예정이며, 창고 배정은 임의로 지정 되며, 시설물 설치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사업주체의 별도 시공으로 시공사에 하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 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등은 입주시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주택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카탈로그 및 각종 광고홍보물에 표현된 CG(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등)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공사시 단지 내 조경계획, 시설계획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서 대비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CG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시에 제시된 CG,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 일반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배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경관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하는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단,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설계 변경이 예정된 사항의 경우 분양시 견본주택에 별도로 안내 및 고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확인하여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특기사항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뚝급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 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단지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인접세대의 단열을 위한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발코니 비확장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자체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다용도실 상부에 전열교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천장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에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입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 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액정TV(확장시 설치)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최상층을 제외한 천장에 설치됩니다.

▣ 주변현황 / 단지배치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Top Light,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상가 주차장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진출입부(보행자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방차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 시, 별도의 출입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공원, 보행로 등)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따라 인접된 단지 시설 등의 계획레벨,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배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 식재 및 조경시설물, 급배기시설(환기구등), 천창,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의 위치 및 크기,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일조의 제한, 냄새 및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주변의 인접건축물(기존 및 신축 건축물 등)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협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단지환경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 불편, 일조, 조망,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경계 부분에 위치하지만 당사업지에 포함되지 않은 제척부지의 개발 계획 및 변경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입주시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1층 동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입주민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요구, 설치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주동 / 공용부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세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옥탑장식물은 추후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외부 신원아침도시 브랜드 로고(BI)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공동주택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됩니다.
- 옥탑 및 지하주차장 바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일부 공동주택 지붕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 사업자 중계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시행인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 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통행 유효통과높이 : 2.3m, 차량주차부 유효높이: 2.1m)
- PD, AV, EPS, TPS, S.T, AD, PIT 등의 내부벽체(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환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환룸, 기계실, 발전기실, 제연환룸, 우수조, 정화조 등 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배기탑이 일부동 옥상에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일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외관 입면 디자인에 따라 저층부 코어 등 일부마감은 도장으로 시공됩니다.
- 옥상 신축줄눈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유의사항

- 건본주택에는 아파트 59A타입이 설치되며, 도시형생활주택의 타입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위세대 모형 또는 카탈로그를 참고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모형 단지 경계 외부는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모형의 단지 경계 내 바닥표현 모형의 스케일에 따라 표현에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본 시공시 패턴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개수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방 벽, 거실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옵션 선택시) 및 인조대리석 (거실 벽, 주방 벽,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공사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엔지니어드스톤(옵션 선택시) 및 인조대리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옵션 선택시) 및 인조대리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홈넷 월패드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또한 주방가구가 설치되는 바닥은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선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54조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견본주택을 촬영 또는 가상으로 구현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자료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 / 전기 /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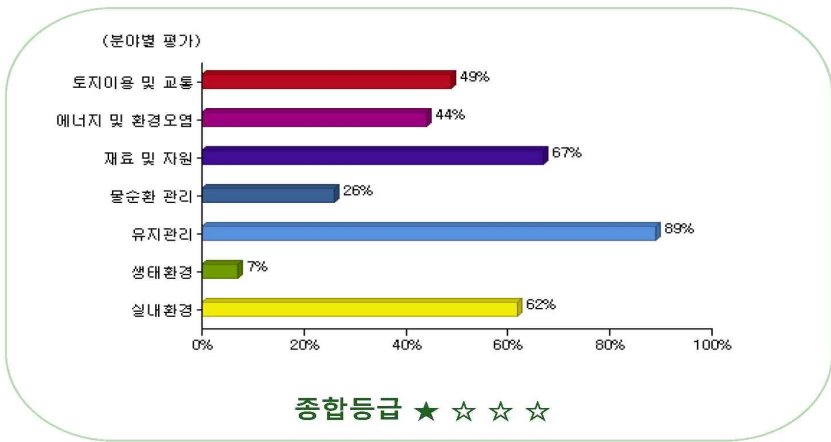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창 창호의 유무 및 창호크기,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키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소하동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신축공사 건축주 : 정우연립 소규모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2024.05.31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893-3 외 3필지 층수 : 지하2층 / 지상20층 연면적 : 23,002.16㎡ (평가 연면적: 22,297.26㎡)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건축사사무소미형설계	인증번호 : 2021-352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1.09.15.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9월 15일

한국부동산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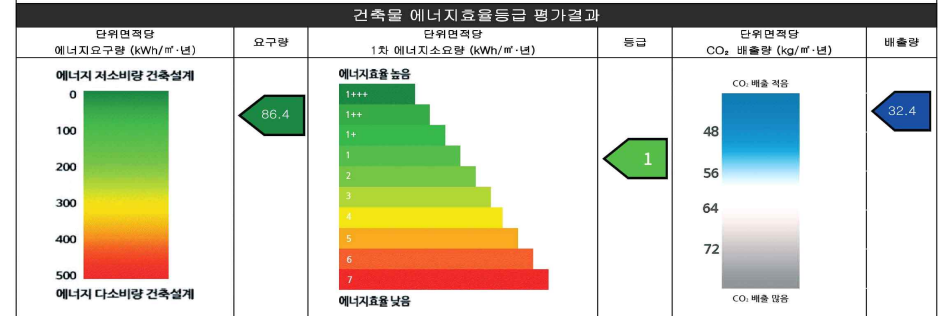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소하동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신축공사 준공연도 : 20240801 주소 : 경기 광명시 소하동 893-3 외 3필지 층수 : 지하2층 / 지상20층 연면적 : 23002.1600(㎡)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건축사사무소 미형설계	인증번호 : 21-주-에-1-0305 평가자 : 신민철 인증기관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5.2	89.0	68.7	18.5
급탕	30.7	36.6	27.2	7.5
조명	10.5	10.0	27.4	4.7
환기		3.6	10.0	1.7
합계	86.4	139.2	133.3	32.4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 설치된 [V] 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2021년 09월 07일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부위,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7812023-101-0001000호	₩21,835,38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공동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 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상 호	(주)토인이앤씨건축사사무소	(주)하일기술단	(주)하일기술단	(주)하일기술단
금 액	732,206,200	209,000,000	132,000,000	88,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정우연립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34971-0003692	110111-0350712
주 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399, 501호 (소하동)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09, 제지하동 제상가층 제1호(화성공구유통밸리)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광명 소하 신원아침도시1 건본주택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17번길 11
- 사 업 지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893-3번지 일원
- 홈페이지 : www.sw-gm.co.kr
- 분양문의 : 02)899-8281

